

審 查 報 告 書

2000. 12. 20
總務委員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0. 12. 12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0. 12. 14

라. 上程日字 : 2000. 12. 20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社會女性福祉課長 安光來)

가. 制定理由

본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에 있음.

나. 主要骨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사용범위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사업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7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자활 공동체가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여 2000. 12. 1 서산시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설치)에 의거 조례안중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이 적합하며,
- 기금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하여 명확히 하였고,
- 지원절차 및 사업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액의 범위와 이차 및 상환기간 등 적정을 기하였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규정을 정하였음.

- 또한,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조례 제4조제3항 중 「...운용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로 하여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충청남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관련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없고 상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8조4항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③(생 략)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 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3.(생 략)</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③(현행과 같음) ④----- -----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 ---, 1~3.(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 185 호
의결년월일	2000. 12. . (제 회)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2000. 12. 12.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호
----------	-------

제출년월일 2000. 12. 28.
제 출 자 서 산 시 장

1. 제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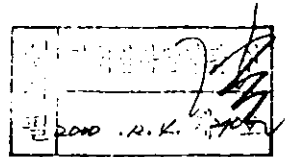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2. 주요 골자

-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제2조)
- 기금의 사용범위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제3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
-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사업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3. 참고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기금의 적립),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제42조(기금의 재원), 제43조(기금의 용도)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관련 표준안(충남도 복지 65130-1953 2000. 9. 21)
-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0. 10. 23 ~ 11. 1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산시의 출연금
2. 서산시 이외의 사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이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서산시 금고에의 예치
2.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